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8,455,343	8,953,660
일반회계	274,068,924	8,222,068
특별회계	24,386,419	731,593
기타특별회계	24,386,419	731,5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64,979	25,949
주택사업특별회계	377,239	11,31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53,780	31,6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53,052	58,59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84,609	32,538
주차장특별회계	456,467	13,694
수질개선특별회계	17,591,234	527,7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56,697	19,701
기반시설특별회계	348,362	10,45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56,48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